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55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553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9가단107883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담당변호사 강재룡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서병준

변론 종결 2021. 4. 15

판결선 고 2021. 4. 29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9가단107883 판결

주 문

-or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게 포천시 D 임야 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9.

2. 20. 접수 제57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진정명의 회복을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줄부터 제5쪽 제4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하지만 갑 제5, 6, 10, 11호증, 을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1)E와 F이 원고와 피고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E와 F이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사업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약정의 효력이 곧바로 원고와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존속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의 효력 여부를 결정할 의도였다면 그러한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는 그러한 취지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더욱이 피고 B이 이 사건 약정의 기재와 같이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약(사업권, 금전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을 무효로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특히 피고 B은 F의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 C으로부터 돈을 대여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포함한 여러 계약을 통하여 그 대여금을 피고 B의 사업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피고 B이 체 결한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상회복이라 해석할 수 는 없고,이 사건 약정에서 원상회복이라 함은 E와 F 사이에 '본 사업과 관련한 모 든 계약(사업권,금전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y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익을 계산하여 공평히 분담하기로 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판사 김천수판사 안성민